

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경위

가. 발 의 자 : 정진술 의원(찬성자 11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2215호

다. 발의일자 : 2021. 2. 5

라. 회부일자 : 2021. 2. 9

2. 제안이유

○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의용소방대원이 화재의 경계와 진압 및 구조·구급의 업무 보조 등 임무 수행과 이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·부상을 입거나 사망 등에는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,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○ 이에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및 임무수행을 독려함으로써 안정된 소방업무를 지원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또는 교육·훈련으로 인한 질병·부상·사망 등에 대한 재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18조 제4항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입법예고 결과 : 해당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(4) 비용추계 등의 자료 : 원안참조

5. 검토의견

■ 개요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) 개정('20.12.08)으로 의용소방대원의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.

[표 1] 현행과 개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18조(재해보상) ①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의용소방대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.</p> <p>1. 요양보상: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</p> <p>2. 장애보상: 의용소방대원의 장애의 정도가 확정된 날</p> <p>3.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: 의용소방대원이 사망한 날</p> <p>② 시장 또는 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재해보상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는 「민법」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	<p>제18조(재해보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</p>

■ 의용소방대 운영 및 재해보상금 지급 현황

- 2020년 기준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현황을 살펴보면, 소방서 및 안전센터별로 설치된 의용소방대는 총 195대 4,832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,
- 같은 해 기준으로 총 16,189회 출동하여 연인원 46,235명이 소방업무를 보조하였고 이 같은 고유 임무수행 이외에도 봉사활동 등으로 총 1,659회(연인원 3,430명) 참여한 것으로 나타남. ([표 2,3] 참조)

[표 2] 2020년 서울시 의용소방대 운영 현황

구 분	내 용
운영실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조직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국 총 3,902대, 총 96,561명으로 구성 활동 중 - 서울시 총 195대 4,832명(현원)으로 구성 활동, 정원은 4,860명 ○ 출동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0년 총 16,189회, 연인원 46,235명 출동하여 소방업무 보조 ○ 봉사활동 실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20년 총 1,659회, 연인원 3,430명 출동하여 봉사활동 전개

[표 3] 서울시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세부실적 현황(2020년)

구분	계	김장 봉사	연탄 배달	마스크 기부행사	배식 봉사	블우이 웃돕기	목욕 봉사	장애인 시설보조	자연 보호	기타
건수	1,659	25	2	13	1,345	147	3	15	8	101
인원	3,430	25	67	111	1,926	654	55	134	80	378

- 법 제17조1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2)에 따르면, 의용소방대가 법 제7조3)에 따른 임무의 수행과 법 제13조4)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 혹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.
- 여기서, 재해보상금 지급은 신청→접수→심의→건의→확정의 총 5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평균 약 1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(〔그림1〕 참조), 최근 3년간 서울시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지급 건수는 총 2건에 해당함. (〔표 4〕 참조)

-
- 1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(재해보상 등) ① 시·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의 수행 또는 제13조에 따른 교육·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〈신설 2020. 12. 8.〉 [시행일 : 2021. 6. 9.]
 - 2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21조(재해보상) ① 법 제17조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요양보상
 2. 장애보상
 3. 장제보상
 4. 유족보상
 ②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 8과 같다.
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 - 3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(임무)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
 2. 구조·구급 업무의 보조
 3.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
 4. 화재예방업무의 보조
 5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4) 「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3조(교육 및 훈련) ① 소방청장,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교육(임무 수행과 관련한 보건안전교육을 포함한다)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의 내용, 주기,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

[그림 1] 현행 재해보상금 지급 순서도

[표 4] 최근 3년간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지급현황(2건)

연번	성명	사고일시	진단명	보상금 지급액
1	○○○	'19.5.23. 14시경	좌측 슬관절 내측 연골판 부분파열	4,465,200원
2	○○○	'20.1.7. 11시경	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	3,566,200원

- 다만, 현행법 상 재해보상금 지급범위가 법정 임무수행 또는 교육 및 훈련 중에 발생한 재해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자원봉사활동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.
- 이에 울산광역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재해보상금 대신 단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.

[표 5] 타·시도 자원봉사 관련 보험가입 및 보상 현황

구분 시·도	가입인원	보험기간	소요예산(원)	1인비용	보상건수	비고
울산광역시	1,527	20.2.1~21.2.1	2,885,670	1,880	2건	
충청남도	9,705	20.3.13~21.3.13	20,914,000	2,130	1건	
창원시	1,155	20.5.1~21.5.1	1,674,750	1,450	2건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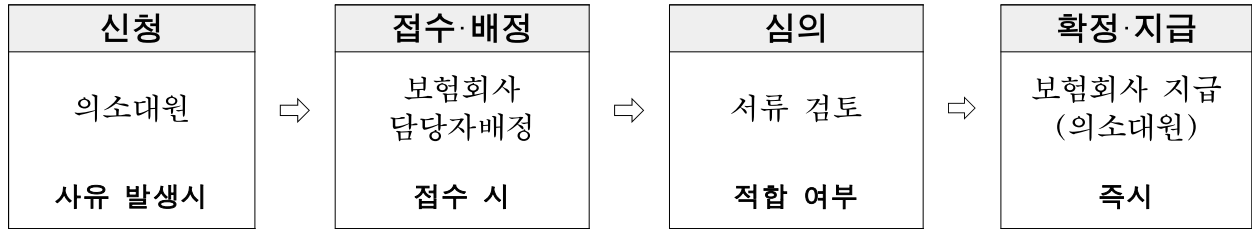
■ 개정안에 대한 의견

- 안 제18조제4항의 신설은, 법 제17조 개정으로 기존에 예산에서 지급되던 재해보상금을 시·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보험 가입을 통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, 이를 근거하여 조례에도 반영하려는 것인데 법 제17조제2항과 달리 재량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설치하는 것이 다른 점임.
- 본 개정안이 이처럼 보험가입을 강행규정으로 설치하려는 취지를 살펴보면, 현행의 경우 의용소방대원이 재해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득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심의에 필요한 각종 서류⁵⁾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 준비로 인한 불편함이 재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회피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됨.
- 즉, 현행과 같이 재해보상금 지급 신청에 의해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해보상금을 수령하기 보다는 보험가입을 통해 재해를 당한 의용소방대원이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절

5) 「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시행규칙 [별지 제12호 서식](요양, 장애, 장제, 유족)보상청구서

제출서류	1. 요양보상(①,③,④,⑦,⑧) 2. 장애보상(①,②,③,④,⑦,⑧) 3. 장제보상(③,④,⑤,⑥,⑦,⑧) 4. 유족보상(③,④,⑤,⑦,⑧) ① 의사진단서, 진료영수증, 진료내역서 각 1부. ② 장애증명서류 1부.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.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(사고발생 보고서, 목격자 진술서 등) 1부. ⑤ 사망진단서(사망증명 서류) 1부.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. ⑦ 통장사본 1부.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(필요시) 1부.
담당공무원 확인사항	요양·장애보상 : 주민등록등본,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장제·유족보상 : 가족관계증명서· 인감증명서

차적으로 보다 용이([그림2] 참조)하고 행정력도 절약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 여겨짐.



[그림 2] 보험가입 후 지급 순서도

- 따라서 본 개정안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할만하다 할 것이나,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3년간의 서울시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지급 사례가 총 2건에 약 8백만 원에 불과하여 보험가입으로 대체할 경우 예산의 득실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,
- 또한, 상위법이 보험가입에 대해 시·도지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위 조례가 시·도지사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강행규정으로 설치할 경우 법적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도 있어 보임.
- 이러한 점에서 살펴볼 때, 본 개정안의 보험가입 강행규정을 상위법과 일치되게 재량규정으로 수정하여 시장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지고,
- 이와 함께, 의용소방대원들이 소방임무와 교육·훈련이외에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행은 봉사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규정이 없는 관계로 적절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,

- [표 6]과 같이 의용소방대 소방임무 수행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 보험가입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봉사활동 독려가 필요하다 사료됨.

[표 6] 개정안과 수정안 조문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8조(재해보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	제18조(재해보상) ① ~ ③ (조례안과 같음)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금 지급과 제1항 이외의 활동에 따른 재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.

- 마지막으로, 개정안 부칙과 관련해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는데 이는 개정된 법 시행일(2021.6.9.)과 일치시킨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음.